

후대교배종 옥수수 Bt11xDAS-59122-7xMIR604xTC1507xGA21

1. 법적근거
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, 제12조 3항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-4조, 제4-9조

2.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

	모품종 1	모품종 2	모품종 3
Event 명	Bt11	DAS-59122-7	MIR604
특성	해충저항성, 제초제저항성	해충저항성, 제초제저항성	해충저항성
심사완료일			
	모품종 4	모품종 5	
Event 명	TC1507	GA21	
특성	해충저항성, 제초제저항성	제초제저항성	
심사완료일			

3. 심사경위

- '08.1.1일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 LMO는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함. 다만, 이미 환경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간 인공교배에 의해 육종된 후대교배종은 상호작용 유무, 후대교배종의 특성 등을 검토함.
- '11.4.15일 LMO 환경위해성 심사 접수 및 심사 진행